

개정 정보기술협정(ITA II) 발효 및 시사점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ITA II)이 2015년 12월 17일 타결되어 금년 7월 1일 정식 발효를 앞두고 있다. ITA II 타결품목의 전세계 무역액은 1.8조 달러로 전세계 수출액의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역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우리기업은 FTA 미체결국가는 물론 양허제외·장기철폐 품목이 많은 FTA 체결국가에서 ITA II 수혜가 기대된다. FTA 미체결국인 대만은 수입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광학기기, 레이저기기, 팬 등에서 ITA II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FTA를 체결한 참여국의 경우 FTA 협정 보완 측면에서 우리기업의 혜택이 기대되는데 중국의 경우 금년에는 반도체 제조장비, 전기계측기, 의료기기 2017~2018년에는 액정디바이스, 자동제어기, 광학기기, 진공펌프 등의 수출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에서도 TV, 라디오, 여과·청정기 등의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01. 개정 정보기술협정(ITA II)¹⁾ 개요

- 53개국²⁾이 참여하는 WTO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ITA II)이 2015년 12월 17일 타결되어, 금년 7월 1일 정식 발효를 앞두고 있음
 - ITA II 참여 53개국은 WTO 가입국 모두에게 ITA II 관세철폐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비참여국은 자국시장 개방의무가 없음
 - 한국의 경우 수입 시 WTO 전 회원국에 ITA II 관세혜택을 부여해야 하나 수출 시에는 52개 참여국에서만 ITA II 관세철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ITA II는 참여국의 국내절차 완료 및 발효조건 충족 시³⁾ 금년 7월 1일 발효하며 품목별로 즉시(전체 품목의 65.3%) 또는 최장 9년간 균등 철폐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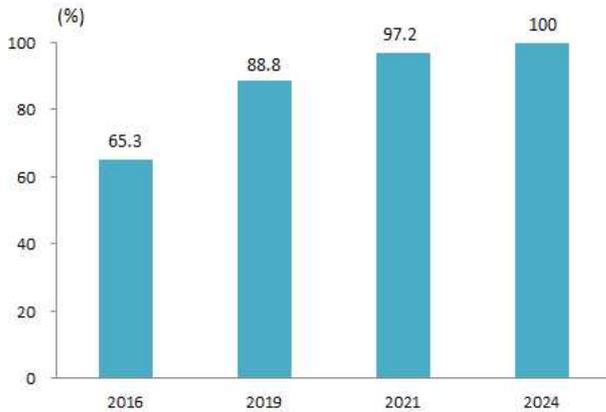
1)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 :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등 주요 IT제품 및 부품에 대한 WTO 복수국간 협정으로 1997년 7월 ITA I이 발효되었으며 1998년 6월부터 ITA 품목확대 협상이 진행되어 왔음

2) ITA 확대협상 최종타결 참여국 : 알바니아, 호주, 캐나다,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EU(28개국), 과테말라,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싱가포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대만, 태국, 미국

3) ①참여국 국내절차 : WTO 양허표 수정, 법령개정 등 ITA II 이행을 위한 각국의 국내절차 완료를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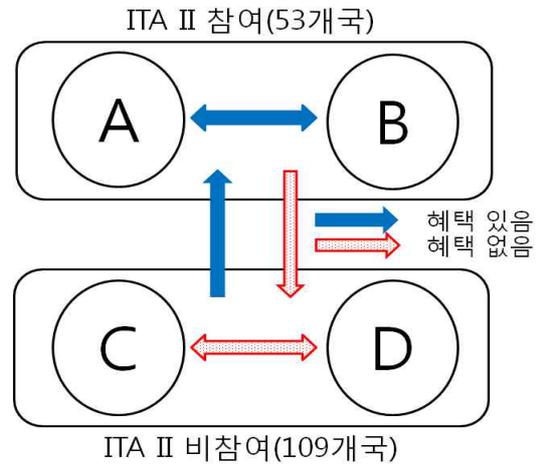
②발효조건(Critical Mass) : 53개 참여국 ITA II 타결품목의 세계 무역비중이 90%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동 조건이 충족됨

< ITA II 연도별 관세철폐 품목 수 비중 >



자료 : WTO, ITA 확대협상 Briefing note

< ITA II 국가별 관세혜택 비교 >



자료 : WTO, ITA 타결 선언문

● ITA II 타결품목은 HS 6단위 기준 191개 품목(Attachment A)과 HS 미분류 10개 품목(Attachment B) 등 총 201개 품목으로 구성

- (Attachment A)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유·무선 통신기기 및 부품, 광학기기, 음향기기, 영상기기, 의료기기 등 191개 품목
- (Attachment B) 반도체 복합구조 칩(Multi-Component ICs, MCO), 진공펌프, 터치스크린, LED 후면모듈, 잉크 카트리지 등 10개 품목

● ITA II는 특혜원산지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어 수출기업의 활용 여지가 큼

- ITA II는 해당품목의 MFN 관세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FTA와 같이 원산지 증명서 제출, 사후검증대응, 서류 및 증빙관리 등의 추가업무 부담이 없음

- FTA 관세철폐 품목도 동 품목이 ITA II 수혜 품목인 경우 업무 부담이 경감됨

< ITA II와 FTA의 행정소요 비교 >

협정/행정소요	원산지 증명서 제출	원산지 관리 전담자 필요*	서류 및 증빙관리	사후검증대응
ITA II	×	×	×	×
FTA	○	○	○	○

주 : FTA 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
 자료 : FTA 종합지원센터 「FTA 활용」, 저자정리

참고

- 원산지 증명서 : 수출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수입국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통관 시 제출
- 서류 및 증빙관리 : FTA특례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서류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며 상대국 세관 등으로부터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사후검증 : 수입국이 FTA 수출국 업체에 대해 원산지규정의 충족, 증빙서류의 유지관리, 직접 운송원칙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자료 : FTA 종합지원센터

02. ITA II 품목의 무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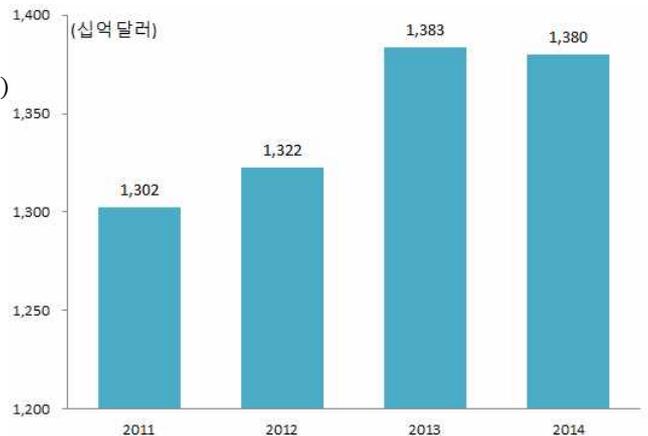
● ITA II 타결품목의 전세계 무역액은 1.8조 달러로 전세계 무역액의 10.2%를 차지

- ITA II 품목의 전세계 무역액은 지난 3년간 연평균 2.1% 증가하여 세계 총 무역 증가율(0.5%)을 상회
- 한편, ITA II 참여국의 타결품목 수출액은 1.4조 달러로 전세계 ITA II 품목 수출액의 73%를 차지

〈 ITA II 품목의 전세계 수출액¹ 〉

	2010	2012	2014	연평균 증가율 ²
전세계 수출액(a)	14,899	17,834	17,951	0.5
ITA II 수출액(b)	1,578	1,729	1,827	2.1
(b/a)	10.6	9.7	10.2	-

〈 ITA II 참여국 타결품목의 對세계 수출액 〉



주 1 : ITA II Attachment A 품목 기준으로 대만, 리히텐슈타인 제외
 주 2 : 2011~2014년 기준
 자료 : UNcomtrade

주 : ITA II Attachment A 품목 기준으로, 대만, 리히텐슈타인 제외
 자료 : UNcomtrade

● 한국의 경우 ITA II 품목의 對세계 수출은 857억 달러이며, 이중 ITA II 참여국에 대한 수출은 713억 달러로 참여국 수출비중이 83.1%에 달함

- 한국의 對참여국 전체 수출액 중 ITA II 품목 수출비중은 18.4%이며, 지난 5년 간 연평균 4.7% 증가하여 전체품목(2.6%)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임

〈 한국의 ITA II 품목 수출 현황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1~'15년 연평균 증가율
對세계 전체품목	4,664	5,552	5,479	5,596	5,727	5,268	2.5
- ITA II 품목(a)	619	700	745	867	863	857	6.7
對ITA II 참여국 전체품목(b)	3,404	3,982	3,963	4,048	4,130	3,865	2.6
- ITA II 품목(c)	566	626	635	732	730	713	4.7
- 비중(c/b)	16.6	15.7	16.0	18.1	17.7	18.4	-
- 비중(c/a)	91.6	89.4	85.3	84.4	84.6	83.1	-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ITA II 참여국 중에서는 중국, 홍콩, 미국, EU, 일본, 아세안에 대한 수출이 많은 편
 - 특히, 필리핀,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와 홍콩에 대한 수출액이 지난 10년 간 연평균 20%이상 증가

〈 한국의 ITA II 양허품목 국가별 수출 현황¹ 〉

(억 달러, %)

대상 국가	2005년		2010년		2015년		(b-a)	'06~'15년 연평균 증감율
	수출액 (비중, a)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b)				
중국	131 (46.1)	235 (38.1)	397 (46.3)	0.2	11.8			
홍콩	17 (6.0)	96 (15.6)	123 (14.3)	8.3	21.9			
미국	20 (7.1)	49 (7.9)	41 (4.7)	- 2.4	7.3			
EU	36 (12.7)	41 (6.6)	34 (4.0)	- 8.7	-0.4			
일본	14 (4.9)	48 (7.7)	28 (3.2)	- 1.6	7.3			
필리핀	2 (0.6)	6 (1.0)	26 (3.1)	2.5	32.3			
대만	7 (2.4)	46 (7.5)	22 (2.6)	0.2	12.7			
싱가포르	2 (0.8)	25 (4.0)	20 (2.3)	1.5	23.9			
말레이시아	3 (1.2)	8 (1.3)	10 (1.2)	0.0	11.8			
태국	3 (1.0)	6 (0.9)	8 (0.9)	- 0.1	10.4			
참여국 총합계	237 (100.0)	566 (100.0)	713 (100.0)	-	11.7			

주 1 : ITA II 참여국 중 한국의 ITA II 양허품목 수출 상위 10개국 기준

주 2 : () 내는 전체 참여국 대비 개별국가의 수출액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03. 주요 참여국의 ITA II 양허내용 및 수출유망품목

- FTA 미체결국가 및 양허제외·장기철폐 품목이 많은 일부 FTA 체결국가를 중심으로 ITA II 관세철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1) FTA 미체결 국가

- (홍콩, 싱가포르) ITA II 양허대상 모든 품목이 이미 무관세로 개방되어 ITA II로 인한 추가적인 관세혜택은 거의 없음
- (일본, 대만) ITA II 대상품목 중 기존 무관세 제품을 제외하면 일본 11개, 대만 175개 품목에서 ITA II 관세철폐 효과가 예상됨

〈 일본, 대만 ITA II 수혜품목 〉

(백만 달러, %)

양허유형	일본				대만			
	최종단위 품목수	對세계 수입액	對한국 수입액	한국 점유율	최종단위 품목수	對세계 수입액	對한국 수입액	한국 점유율
즉시철폐	11	903	99	10.9	36	43	3	7.9
2019년 철폐	-	-	-	-	129	6,484	479	7.4
2021년 철폐	-	-	-	-	10	201	6	3.2
수혜품목 합계	11	903	99	10.9	175	6,728	489	7.3

주 : 일본은 2015년, 대만은 2015년 1~11월 기준

자료 : WTO, Global Trade Atlas, Trade Map

- (대만) ITA II 관세철폐 품목 중 최근 수입이 확대되고 있는 광학기기, 레이저기기, 팬 등에서 수출 증가가 기대됨

- 광학용품, 레이저 기기, 기타 액체용 여과기·청정기, 기타 팬의 對한국 수입 증가율이 경쟁국을 상회하여 향후 한국의 점유율 확대가 기대

- * 대만의 연평균 수입액 증가율(2012~2015, %) : ① 기타 광학용품 : 對한국 42.8, 對일본 30.4
 ② 레이저 기기 : 對한국 21.6, 對미국 2.8
 ③ 기타 액체용 여과기·청정기 : 對한국 30.8, 對일본 6.8
 ④ 기타 팬 : 對한국 21.6, 對중국 8.3

< 대만 ITA II 활용 수출 유망품목4 >

(백만 달러, %)

HS	품목명	對세계 수입액	한국 점유율	1위 국가 점유율	MFN/ 기준세율	ITA 양허 ²
90029090002	기타 광학용품	145	11.1	일본 56.3	5.0	4년
90132000003	레이저기기 (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외)	144	0.4	미국 43.6	5.0	4년
90021900009	기타 대물렌즈	125	1.4	독일 34.1	3.4	4년
84212900002	기타 액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110	1.4	일본 31.4	3.0	4년
84145900004	기타 팬(송풍, 환기, 배기, 건조용 등)	91	4.9	중국 59.8	4.7	4년
85287110009	비디오 튜너(TV 전파 수신 및 추출장치)	52	4.4	중국 94.4	4.5	4년
85489090005	기타 전자부품	23	2.5	일본 36.8	2.5	4년
85299011004	컬러 텔레비전 새시 또는 PC 보드 집합체	4	16.6	베트남 51.8	10.0	4년

주 1 : 음영은 對한국 수입 증가율이 20% 이상 품목

주 2 : N년 균등철폐

주 3 : 수입액 및 점유율은 2015년 1~11월 기준

자료 : Trade Map, TradeNAVI

(2) FTA 체결 국가

- (미국, EU) ITA II 양허품목의 FTA 협정세율이 이미 무세로 전환되어 ITA II를 통한 추가적인 관세 혜택은 없음

-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한·아세안 FTA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을 중심으로 관세 혜택이 예상되며, 이미 관세가 철폐된 품목도 ITA II 적용을 통해 우리기업의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한·아세안 FTA에 의해 관세가 철폐되지 않은 TV·라디오 수신기기, 연결부품, 기체용 여과기·청정기 품목에서 ITA II 효과가 가능함

4) 유망품목 선정기준 : 2015년 대만의 對세계 수입액 100만 달러 이상, '12~'14년 연평균 수입증가율 5% 이상, 對한국 수입액이 50만 달러 이상 품목

- 한·아세안 FTA는 복잡한 통관절차로 인해 FTA 수출 활용률이 타 FTA에 비해 저조하여 통관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한 ITA II를 활용한 경우 수출 확대가 기대

* 한·아세안 FTA 수출 활용률(2015) : 42.5%, (14개 전체 FTA 수출 활용률 : 71.9%)

한·아세안 FTA 통관애로(2014~2015) :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54건, 규정해석 상이 20건 등 총 103건
최근 2년 전체 FTA 통관애로(235건)의 44%차지 (자료 : 관세청)

<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의 ITA II 수혜품목5) >

국가	HS	품목명	MFN	FTA 세율	ITA II	
					세율	수혜 시기
말레이시아	852871100	모니터·프로젝터·텔레비전 수신용 기기	30	5	0	2019
필리핀	85369099	기타 전기회로 개폐·보호·접속용 기기	1	- (양허 제외)	0	2017
	35069100	폴리머 또는 고무를 기제로 한 접착제	5	5	2	2017
태국	84145910	반도체·정보통신기기 등의 냉각용 팬	10	5	0	2019
	84213990	기타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5	5	0	2019
	85271200	휴대용 라디오 카세트	10	5	0	2019
	85271310	기타 라디오 카세트	10	5	0	2019
	85271390	기타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10	5	0	2019
	85279110	휴대용 라디오 방송 수신기기 (음성 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	10	5	0	2019
	85279190	기타 라디오 방송 수신기기 (음성 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	10	5	0	2019

주 1 : 수혜시기 협정관세율
자료 : TradeNAVI

- (중국) 한·중 FTA의 장기철폐 또는 양허제외 품목의 경우 ITA II에 따른 추가적인 관세철폐 효과가 예상

- 중국의 ITA II 양허품목은 2023년까지 관세가 철폐*되어 한·중 FTA의 10년 이상 장기철폐, 부분철폐(PR-N), 양허제외 품목의 양허수준을 상회

* 중국의 ITA II 철폐시기별 품목 수(개) : 159(즉시) → 112('19년) → 104('21년) → 50('23년) (자료 : WTO)

- [2016년 유망품목]

- ① (반도체제조장비, 전기계측기)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전압·전류·저항·전력 측정기기 등 수출 주력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혜택을 바탕으로 수출확대 가능
- ② (의료용기기) 안과용 의료기기, 초음파 영상진단기, 저량 엑스선 검사장비 등에 대한 중국내 수입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관세철폐에 따른 우리기업의 수출증대가 기대됨

5) 수혜품목 선정기준 : 한·아세안 FTA와 비교하여 ITA II 협정세율이 유리한 품목, '17년~'19년 기준

- [2017, 2018년 유망품목] ITA II 관세철폐가 진행됨에 따라 액정 디바이스, 자동 제어기, 물리화학 분석기, 광학기기, 진공펌프, 프린터 등의 對중국 수출 확대가 기대

* 배기가스 여과·정화장치 (HS 84213990) : APTA 3.5%(2016) → ITA II 3.3%(2017)
 가스·매연 분석용 기기 (HS 90271000) : 잠정 5%(2016, 2017) → ITA II 4.4%(2018)

〈 연도별 對중국 ITA II 활용 수출 유망품목6〉

HS ¹	품목명	對세계 수입액	한국 점유율	1위 국가 점유율	FTA		ITA II ² 세율	
					양허 ³	세율 ²		
2016	84864039	기타 반도체·평판 디스플레이 제조기기	860	52.8	일본 23.3	PR-30	4.4	4.2
	90185000	안과용 의료기기	375	0.8	미국 36.6	PR-35	3.4	3.3
	90303390	기타 전압·전류·저항·전력 측정 및 검사기기 (기록장치가 없는것)	225	21.7	일본 13.6	E	9.0	7.9
	85272100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카스테레오)	189	3.2	체코 37.9	15년	13.0	11.3
	90328100	자동제어용 기기	161	3.9	일본 22.0	PR-35	6.0	5.8
	85272900	기타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	65	17.2	헝가리 39.2	15년	13.0	11.3
	84769000	자동판매기 부품	36	3.9	멕시코 25.2	10년	8.0	7.5
	90181299	기타 초음파 영상진단기	35	17.2	미국 33.0	PR-10	4.8	4.4
	84238290	기타 중량 측정기기 (최대 측정용량 30KG 초과 5,000KG 이하)	14	14.3	독일 38.2	10년	8.4	7.9
	90221910	기타 저량 엑스선 검사장비	13	8.6	미국 35.1	15년	3.4	3.3
2017	90139090	기타 액정 디바이스 (무기용 망원조준기, 잠망경, 레이저 기기 등)	77	12.8	일본 75.3	15-A	8.0	4.2
	84213990	기타 내연기관용 배기가스 여과·정화장치	34	6.9	독일 18.1	10년	3.5	3.3
	90322000	자동 압력 조정계(manostat)	2	5.8	미국 20.1	10년	4.9	4.7
2018	90271000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691	11.9	독일 25.6	15년	5.1	4.4
	90029090	기타 광학렌즈	657	18.7	대만 49.5	15년	11.0	9.4
	84141000	진공 펌프(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590	29.6	일본 19.3	10년	4.8	4.0
	84433221	잉크 제트방식 프린터	280	2.1	일본 17.6	10년	4.8	4.0
	84734010	현금 자동처리액정디바이스 및 부품	193	1.3	필리핀 32.3	20년	8.4	2.6

주 1 : 음영은 對한국 수입 증가율이 30% 이상 품목

주 2 : 수혜시기 협정관세율

주 3 : N년 균등철폐, E : 양허제외, PR-N : 기준관세율 N% 5년 균등철폐 이후 기준관세율의 100-N% 부과,
 15-A : 이행 11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5년 균등철폐

주 4 : 수입액 및 점유율은 2015년 기준

자료 : 중국해관총서, TradeNAVI

6) 유망품목 선정기준 : 중국의 MFN(잠정 포함), 아태협정세율(APTA), 한중 FTA와 비교하여 ITA II 협정세율이 가장 낮은 품목,
 2015년 중국의 對세계 수입액 1000만 달러 이상, '12-'15년 연평균 수입증가율 5% 이상, 對한국 수입액 100만 달러 이상 품목

- 특히 중국의 경우 품목에 따라 ①최혜국세율(MFN)/잠정세율 ②한·중 FTA ③APTA ④ITA II 등의 관세율이 존재하여 양허수준 검토를 통한 유리한 세율 적용이 중요

* <사례> 편광재료로 만든 판(HS 코드 : 90012000)의 시기별 유리한 세율

2016년 잠정(6%) → 2017년 상반기 한·중 FTA(5.6%) → 2017년 하반기 ITA II(5.3%) → 2018년 상반기 한·중 FTA(4.8%) → 2018년 하반기(4.0%) ITA II 적용이 가장 유리

< 편광재료로 만든 판(HS : 90012000)의 협정별 적용 예시 >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上	下	上	下	上	下	上	下	上	下	上	下
적용세율	6.0		5.6	5.3	4.8	4.0	4.0	2.7	2.7	1.3	1.3	0
적용협정	잠정세율		FTA	ITA II	FTA	ITA II						
원산지 증명	×		○	×	○	×	×	×	×	×	×	×

자료 : WTO, TradeNAVI

04. 결론 및 시사점

● ITA II 타결·발효를 계기로 향후 1.8조 달러에 달하는 전세계 ITA II 품목의 무역액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과거 1997년 ITA I 발효 후 양허품목의 전세계 무역액은 연평균 11.5% 증가하며 전세계 IT 제품 무역확대에 기여한바 있음

* ITA I 양허품목 교역량이 1997~2005년 중 11.5% 증가하여 전세계 교역증가율 9.2%를 상회

- 한국의 경우에도 ITA II 참여국 수출에 대한 타결품목 수출증가세가 전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여 수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FTA 관세철폐 품목 수출시에도 동 품목이 ITA II 타결품목인 경우 원산지 증빙이 필요 없고 바이어 요청과 관계없이 관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일본, 대만 등 FTA 미체결국의 유관세 품목과 기체결 FTA 중 한·중, 한·아세안 FTA의 장기철폐 및 양허제의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철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ITA II는 FTA협정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며, 특히 한·중 FTA의 경우 장기철폐, 부분감축, 양허제의 품목 수출 시 ITA II 협정세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경우 ITA II 발효로 금년에는 반도체제조장비, 전기계측기, 의료기기, 2017~2018년에는 액정디바이스, 자동제어기, 광학기기, 진공펌프 등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